

# 2026년 관세사 1차 시험 대비 개정 공지(1)

윤준필 관세사

- 관세사 시험은 시험일 당일 시행 중인 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이 적용됨.
- 현재 발표된 개정법령은 2026년 1월 1일 또는 2026년 1월 2일 시행을 기준으로 하는 관세법, 시행령까지이며, 시행규칙은 추후 확정발표 이후 업데이트 예정

## 1. 공통사항 -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

- (1) 기획재정부 → **재정경제부**
- (2) 기획재정부장관, 기획재정부차관 → **재정경제부장관, 재정경제부차관**
- (3) 기획재정부령 → **재정경제부령**

## 2. 교재 p17 → (3) 공휴일 등에 따른 기한연장(법 제8조 제3항)

- 타 법률 개정에 따른 근로자의 날 명칭 변경

개정 전	개정 후
① 토요일 및 일요일	① 토요일 및 일요일
② 「공휴일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	② 「공휴일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
③ 「 <u>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</u> 」에 따른 <u>근로자의 날</u> (이하생략)	③ 「 <u>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</u> 」에 따른 <u>노동절</u> (이하생략)

3. 교재 p169 → 5.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핵심체크(시행령 제71조의2)

• 우회덤핑 유형의 구체화

개정 전	개정 후
<p>(1) 상기 5.(1)에서 “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”란 법 제51조에 따라 덤핑 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(이하 “덤핑방지관세 물품”이라 한다)에 대해 해당 물품의 공급국 안에서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, 포장방법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는 행위(그 행위로 법 제84조제3호에 따른 관세·통계통합품목분류 표상 품목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하며, 이하 “경미한 변경행위”라 한다)를 말한다.</p> <p>(2) <u>덤핑방지관세물품과 변경된 물품의 생산설비 등 경미한 변경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.</u></p>	<p>(1) 상기 5.(1)에서 “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”란 <b>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</b></p> <p>1. 법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(이하 “덤핑방지관세물품”이라 한다)에 대해 해당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, 포장방법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는 행위(그 행위로 법 제84조제3호에 따른 관세·통계통합품목분류 표상 품목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</p> <p><b>2. 덤핑방지관세물품의 공급국에서 생산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제3국에서 덤핑방지관세 물품과 동종물품으로 단순 조립 또는 가공하는 행위</b></p> <p>(2) <b>상기 (1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(이하 “경미한 변경행위등”이라 한다)</b>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.</p>

4. 교재 p170 → 5.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핵심체크(시행령 제71조의3)

• 용어 수정

개정 전	개정 후
<p>상기 5. (1) ②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무역위원회가 <u>덤핑방지관세물품에 대한 경미한 변경행위를</u> 통해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(이하 “우회덤핑”이라 한다)하려는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.</p>	<p>상기 5. (1) ②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무역위원회가 <b>경미한 변경행위 등을</b> 통해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(이하 “우회덤핑”이라 한다)하려는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.</p>

5. 교재 p173 → 3) 조사기간 연장, 5) 덤프방지관세 부과 결정기간(시행령 제71조의7)

• 기간변경

개정 전	개정 후
<p>3) 조사기간 연장</p> <p>무역위원회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<b>1개월의</b>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p> <p>...(중략)...</p> <p>5) 덤프방지관세 부과 결정기간</p> <p>재정경제부장관은 우회덤프 조사결과를 받은 경우에는 관보게재일부터 <b>8개월</b> 이내에 덤프방지관세의 부과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덤프방지관세를 부과해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보게재일부터 <b>9개월</b> 이내에 덤프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. (이하생략)</p>	<p>3) 조사기간 연장</p> <p>무역위원회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<b>2개월의</b>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p> <p>...(중략)...</p> <p>5) 덤프방지관세 부과 결정기간</p> <p>재정경제부장관은 우회덤프 조사결과를 받은 경우에는 관보게재일부터 <b>9개월</b> 이내에 덤프방지관세의 부과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덤프방지관세를 부과해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보게재일부터 <b>10개월</b> 이내에 덤프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. (이하생략)</p>

6. 교재 p174 → (6)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협조요청(시행령 제71조의9)

• 규정 준용시 용어 및 표현 변경의 구체화

개정 전	개정 후
<p>우회덤프와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제64조제1항 본문 중 “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”는 “법 제56조의2에 따른 우회덤프 조사”로 보고, <b>같은 항 단서 중 “덤프사실여부”는 “우회덤프 여부”로 보며,</b>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59조제6항”은 “제71조의4제1항”으로 보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법 제52조의 조사”는 “법 제56조의2에 따른 우회덤프 조사”로 보며,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“제59조제6항”은 “제71조의4제1항”으로, “제1항, 제8항 후단 및 제68조에 따라 제출 또는 통보된 자료”는 “제1항 및 제8항 후단에 따라 제출된 자료”로 보고,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“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”은 “의견”으로 보며, 같은 항 후단 중 “공청회 등이”는 “진술 또는 협의가”로 본다.</p>	<p>우회덤프와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제64조제1항 본문 중 “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”는 “법 제56조의2에 따른 우회덤프 조사”로, <b>“공급자”는 “공급자(제71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른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공급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”로 보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덤프사실여부”는 “우회덤프 여부”로 보며,</b>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59조제6항”은 “제71조의4제1항”으로 보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법 제52조의 조사”는 “법 제56조의2에 따른 우회덤프 조사”로, <b>“덤프방지를 위한 조치”는 “우회덤프 방지를 위한 조치”로 보며,</b>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“제59조제6항”은 “제71조의4제1항”으로, “제1항, 제8항 후단 및 제68조에 따라 제출 또는 통보된 자료”는 “제1항 및 제8항 후단에 따라 제출된 자료”로 보고,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“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”은 “의견”으로 보며, 같은 항 후단 중 “공청회 등이”는 “진술 또는 협의가”로 본다.</p>

7. 교재 p267 → 1. 서울불균형물품의 면세 핵심체크(시행규칙 제35조 제1항)

•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

개정 전	개정 후
...(중략)... 1. 항공기 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항공기와 그 부분품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 2. 장비 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중 <b>산업통상자원부장관</b>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	...(중략)... 1. 항공기 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항공기와 그 부분품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 2. 장비 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중 <b>산업통상부장관</b>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

8. 교재 p270~272 → 1. 학술연구용품의 감면 핵심체크(시행규칙 제37조 제2항)

•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

개정 전	개정 후
...(중략)... ㉕ (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면세추천을 한 것에 한정한다) ㉗ ...산업통상자원부장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... ㉘ ...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... ㉚ ...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...	...(중략)... ㉕ ( <b>산업통상부장관이</b> 면세추천을 한 것에 한정한다) ㉗ ... <b>산업통상부장관</b> 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... ㉘ ... <b>산업통상부장관의</b> 허가를 받아... ㉚ ... <b>산업통상부장관이</b> 지정한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...

9. 교재 p281 → 1.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핵심체크(시행규칙 제46조 제4항)

•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

개정 전	개정 후
㉒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<b>통계청장</b> 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(이하 “한국표준산업분류표”라 한다)상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: 100분의 30	㉒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<b>국가데이터처장</b> 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(이하 “한국표준산업분류표”라 한다)상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: 100분의 30

10. 교재 p334 → 9. 비밀유지 (1) 목적 외 과세정보 제공 금지 및 예외사항(법 제116조)

•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

개정 전	개정 후
㉔ <b>통계청장</b> 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	㉔ <b>국가데이터처장</b> 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

11. 교재 p482 → 4.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 핵심체크(시행령 제203조 제5항)

- 기간변경

개정 전	개정 후
5.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<b>5일 이내</b> 에 세관장에게 보세공장 외 작업완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.	5.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<b>10일 이내</b> 에 세관장에게 보세공장 외 작업완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.

12. 교재 p505 → 9. 보세판매장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(2)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(시행령 제192조의10 제2항)

-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

개정 전	개정 후
...(중략)... 2. 문화체육관광부· <b>산업통상자원부</b> ·국토교통부·중소벤처기업부·공정거래위원회 및 관세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업무 관련자 각 1명	...(중략)... 2. 문화체육관광부· <b>산업통상부</b> ·국토교통부·중소벤처기업부·공정거래위원회 및 관세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업무 관련자 각 1명

13. 교재 p597 → 2. 무역원활화위원회의 구성 핵심체크(시행규칙 제77조의4)

-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

개정 전	개정 후
...(중략)... 2.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농림축산식품부, <b>산업통상자원부</b> , <b>환경부</b> , 국토교통부, 해양수산부,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세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② ... <b>산업통상자원부장관</b> 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및 「상공회의소법」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중에서...	...(중략)... 2.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농림축산식품부, <b>산업통상부</b> , <b>기후에너지환경부</b> , 국토교통부, 해양수산부,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세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② ... <b>산업통상부장관</b> 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및 「상공회의소법」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중에서...

14. 교재 p735 → 4. (2)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협약기관의 범위 (법 제322조의2 제2항)

- 타 법률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

개정 전	개정 후
...(중략)... ⑤ 「 <b>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</b> 」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	...(중략)... ⑤ 「 <b>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</b> 」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